

FTA 100% 활용하기

수출기업의 원산지 검증 사례 연구와 시사점
- 사례를 중심으로 -

강상혁 | 지에이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수출기업의 원산지 검증 사례 연구와 시사점

- 사례를 중심으로 -



강상혁

-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졸업
- 지에이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 서울세관, 대구세관, 인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구미상공회의소, 포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등 위촉 FTA 전문 컨설턴트

1. 서론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1776년 저서 『국부론』에서 각 국가는 환경, 기후, 자원, 인구 등의 요인에 따라 어떤 생산품에 절대 우위가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상호 간 우위에 있는 상품을 매매하는 무역이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고 관세 부과 등 보호 무역 정책은 부의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자유무역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국부론』이 세상에 나온 지 약 240년이 지났고 애덤 스미스의 모델처럼 전 세계가 자유무역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두 국가 간 또는 경제공동체 간의 소규모 자유 무역(이하 ‘FTA 협정’)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2018년 기준으로 52개국과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로 무역거래를 하고 있으며 FTA 협정 체결국의 무역량은 대한민국 총 무역량 중 6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칠레 FTA부터 시작된 2004년 이전 무역량에 비해 현재 무역량은 120%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폭도 160%

증가(297억불→784억불, 2017년 기준)¹⁾하여 자유무역의 긍정적인 효과는 입증됐다 할 수 있다.

이렇듯 FTA 협정 체결로 협정국 내 기업은 세계 시장 확대 효과 및 관세 절감으로 인한 순이익 증가 효과, 서비스 교역 기회 증가 등의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반면 FTA 협정은 그 혜택에 따른 ‘검증’이라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FTA 협정은 철저히 협정 체결국(이하 ‘역내국’) 간의 이익만을 도모하고 협정 체결국이 아닌 국가(이하 ‘역외국’)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글로벌 대기업, 중견기업은 FTA 검증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여 직접 전문가를 고용하고 전사적 FTA 시스템을 도입, 협력업체에 원산지 관리 지원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이에 투자할 여력이

되지 않고 관심도 미비하여 수출 검증에 대응하지 못해 해외 거래처를 상실하거나 손해 배상 청구를 받기도 하고 수입검증 실패에 따른 세금 폭탄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검증에 대비하여 중소기업들을 위한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 원산지 관리 시스템 개발 등의 각종 FTA 지원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원산지 관리와 관심도를 고취시킬 수 있었다. 한국은 FTA 체결 후 15살이 되었고 그사이 원산지 검증에 대한 수많은 안내 자료와 대응책 등이 마련되었고 구체적으로 원산지 증빙자료를 갖추는데 초점을 두어왔다. 이에 본 문에서는 FTA 원산지 검증 시스템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외 FTA 검증에 대비하여 FTA 검증 컨설팅을 수행하며 겪은 몇 가지 경험을 토대로 검증 이슈에 대한 시사점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한다.

1) 무역통계정보시스템 통계자료

2. FTA 원산지 검증 시스템 개요

FTA 원산지 검증은 검증의 효율성 등을 바탕으로 각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를 검증하는 주체에 따라 ① 수입국의 과세당국이 직접 검증을 실시하는 직접검증²⁾, ② 수입국의 과세당국이 수출국 과세당국에 요청하여 수출국 과세당국이 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³⁾, ③ 선 간접검증 요청 후 회신에 대하여 원산지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수입국 과세 당국이 판단하면 직접검증을 수행 할 수 있는 혼합검증⁴⁾이 있다. 한·미 FTA는 유일하게 수출국과 수입국이 공동으로 검증을 수행하는 공동검증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검증을 수행하는 방법에 따라 수출국 과세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원산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소명하는 서면검증, 직접 생산 현장을 검증하는 현지 검증이 있다. FTA 협정은 서면검증 우선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검증 후 원산지 증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원산지 검증의 주요 대상으로는 수입물품의 HS CODE의 적정성, 원산지 증명서 상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직접운송원칙 준수 여부 확인, 역외국 생산과 불인정 공정 여부 확인, 각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확인 등이 있다.

세관에서 검증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원재료 조달국가가 원산지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해당 국가의 산업 특성 상 산업 관계도를 분석하여 선정하거나 물류의 흐름상 우회 수출 가능성 여부, 여러 협력업체를 통해 완제품이 생산되는 경우, FTA로 인한 국내 산업에 피해 여부 등 다양하다.⁵⁾

검증주체 및 방법, 검증 기간 등은 각 협정문에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물품이 어느 FTA 협정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는 협정문 상의 검증 방법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인 원산지 검증을 대비하는 방법일 것이다.

2) 한·칠레,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3) 한·EU, 한·EFTA, 한·터키 4) 한·아세안, 한·중국, 한·인도

5) FTA 원산지 심사[검증] 매뉴얼, 기획재정부

3. 원산지 검증 사례를 통한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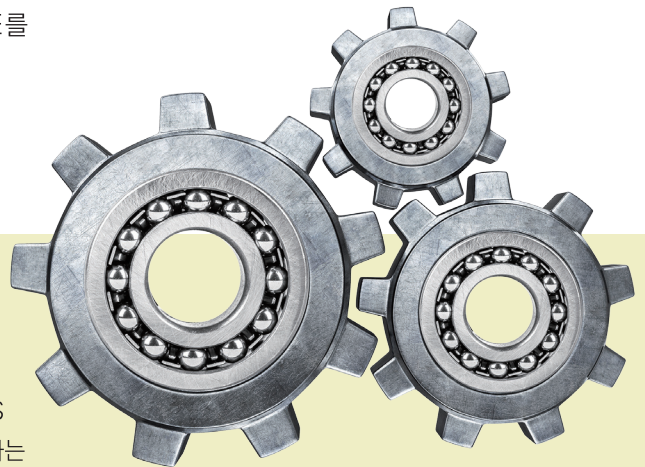
(1) 수입물품 HS CODE 분류의 적정성 검증

HS CODE(Harmonized System Code)란 세계적으로 통일된 물품 분류체계로서 모든 수출입 물품을 코드화 한 것이다. 각 국가의 국정 관세율, FTA 협정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도 이 HS CODE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모든 물품의 수출입 신고 시에 정확한 HS CODE를 분류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적으로 수출신고 시 HS CODE 분류는 관세 부과와 관련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판단⁶⁾ 없이 단순히 물품 명세와 비슷한 HS CODE로 신고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사례 1

미국으로 금속 가공용 프레스의 부품 중 기어박스를 수출하는 업체가 있다. 이 업체는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어박스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며 기존 수출신고하던 HS CODE 금속 가공용 공작기계의 부분품이 해당하는 제8466호로 분류하였다. 미국 세관에서는 해당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소명 요구 있었고 소명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다. 한·미 FTA 협정 상 제8466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CTH(Change of Tariff Heading)로 원재료 명세서상의 충족판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 이때 수출물품 기어박스의 HS CODE 분류에 의심하였고 기어박스는 제8466호가 아닌 제8483.40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제8483.40호는 CTSH(Change of Tariff Sub Heading)를 충족함과 동시에 제8482.10호부터 제8482.80호까지,



제8482.99호, 제8483.10호부터 제8483.40호까지, 제8483. 60호 및 제8483.90호의 것은 역내국 원산지 재료 즉, 쉽게 말하여 기어 박스에 소요되는 Bearing 및 Transmission Shaft 등 일부 부품들은 한국산 또는 미국산 원산지 원재료를 사용하여야 원산지를 충족한다는 기준이다. 해당 산업에서는 실제로 Bearing에 대하여는 독일제품과 일본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해당 기어박스 역시 독일산 수입 Bearing을 사용하여 CTSH는 충족되더라도 이하 단서 규정 미 충족으로 한국산 판정을 받지 못하였다.

6) 한국의 HS CODE의 분류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규정에 따라 분류

FTA 원산지 증명서의 대상이 되는 수출물품은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제품 자체의 HS CODE를 다르게 분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칫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이하여 협정상 원산지가 불충족 할 수 있다.

사례1에서 볼 수 있듯이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위하여 일단 해당하는 수출물품의 HS CODE를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최우선 작업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관세법 상 규정된 ‘품목분류 사전심사’⁷⁾를 관세청에 신청하여 유권해석을 받거나 관세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품목분류 의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판정의 시작은 완제품의 HS CODE 분류부터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 직접운송원칙 충족

직접운송 원칙(Direct cosignment)란 해당 물품이 수출국을 출발하여 제3국을 경유함 없이 곧바로 수입 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대부분의 FTA 협정⁸⁾에서 직접 운송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리적 운송 상의 이유로 역외국을 거쳐 운송되고 역외국내 관세 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운송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중 FTA의 경우 중국과 한국 간의 직항로 보다는 홍콩을 경유하는 항로가 많아 직접운송원칙 위반으로 한·중 FTA의 실효성이 없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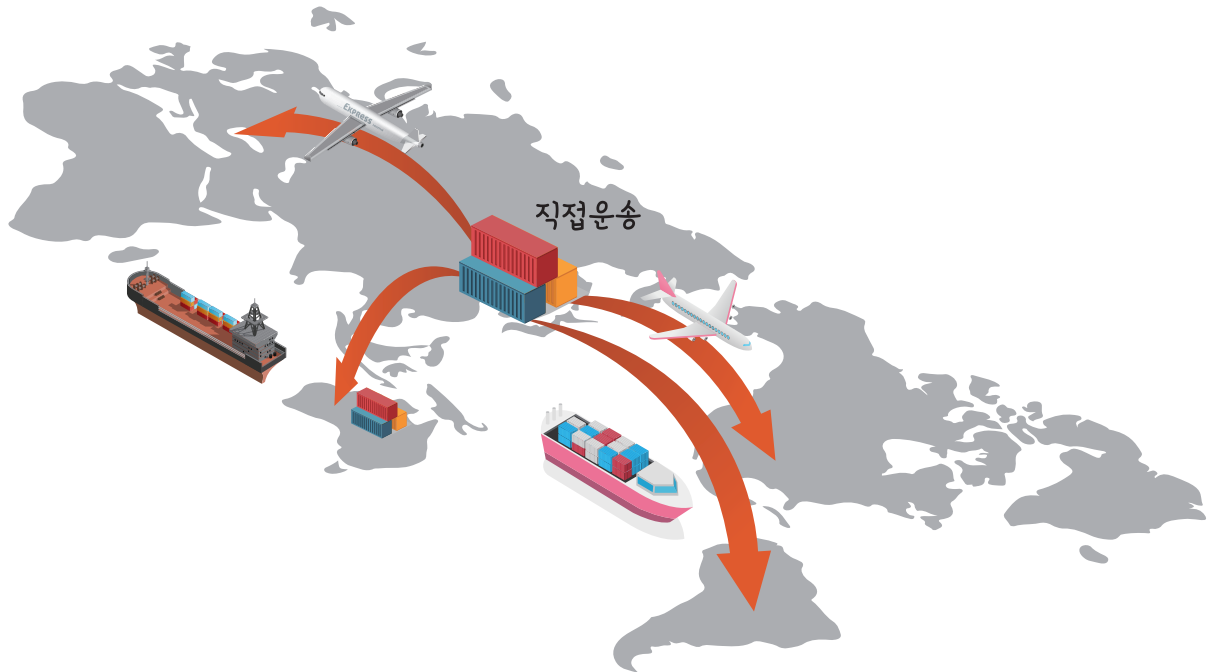
사례 2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업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직항보다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항로가 많다.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업체 중 인도네시아 세관으로부터 한국세관에 간접검증 요청이 있었다. 인도네시아 세관은 인도네시아 수입자에게 해당 수입건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였고 수입자는 인도네시아 세관에 수입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출발항 싱가포르, 도착항 인도네시아로 발급된 B/L을

제시하여 직접운송원칙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받은 것이다. 이에 한국의 운송주선인을 통해 선박회사로부터 싱가포르를 단순경유 되었다는 증명서와 출발항 한국, 도착항 인도네시아로 발급된 Master B/L을 제시하여 제3국 단순경유임을 소명하여 서류검증 단계에서 검증이 마무리 될 수 있었다.

7) 관세법 제86조

8) 미국과 칠레 FTA에서는 직접적으로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당시부터 구체적인 직접운송 원칙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적출국이 중국이고 경유국이 홍콩, 최종 도착 국가가 한국임을 표기하고 있는 통과선하증권(Through B/L)이 발급되거나 이러한 통과선하증권이 없는 경우 홍콩세관에서 발급하는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를 발급받아 관세 당국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운송 원칙 준수로 간주한다.

최근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된 건에 대한 직접운송원칙 준수 여부가 이슈 되었다. 따라서 수출자는 운송주선인 및 선사로부터 반드시 통과선하증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보통 통과선하증권

상에는 출발지(Place of Receipt), 적재항(Port of Loading, 통과선하증권에서 대부분 경유지), 도착항(Final Destination 또는 Port of Discharge)으로 기재되어 있다. B/L 상에 제3국 경유지가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사가 발행하는 경유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명심하여야 한다.⁹⁾

【선사 발급 제3국 단순경유 문구】

* WE HEREBY CERTIFY THAT THE CARRYING VESSEL IS DIRECT VESSEL FROM BUSAN PORT TO JAKARTA PORT

* ROUTE FOR THE CARRYING VESSEL IS AS FOLLOW

1. BUSAN (KOREA)
2. HONG KONG
3. SINGAPORE
4. JAKARTA, INDONESIA

9)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제3국 경유화물) 조항 적용 안내, 주인도네시아대사관(2017.12.11)

(3) 검증 회신 기간 경과

FTA 협정을 적용받은 수입자는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신뢰할 수 밖에 없고 원산지 검증 요청 시에는 수출자의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오랜 기간 거래를 해온 해외의 거래처도 세관의 원산지 검증 통보에 따른 자료 요청을 거부하여 수입자가 관세를 추징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원산지 결정기준 중에 부가가치기준이 많이 규정되어 있는 EU 국가의 수출자는 원가자료 공개에 부담이 되어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하여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다.

사례3에서의 시사점은 FTA 협정을 적용하는 원산지에 대한 소명은 수출자가 하여야 하지만 그에 따른 물리적 피해는 수입자가 입게 된다. 따라서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수출자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출자를 압박하여야 한다. 회신기한은 각 FTA 협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회신기한을 파악하는데도 주의가 필요하다.

(4)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원산지 증명서는 협정문에서 그 형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 협정 체결 국가별로 세관에서 형식적인 요건 충족여부를 엄격히 보는 정도는 상이하다. 한·EU FTA의 경우 당연히 원산지 신고문안은 100% 정확하여야 하고 인증 수출자가 아닌 경우 서명권자의 서명이 없으면 원산지 신고서 자체가 무효다. 한·아세안 FTA 체결국 중 태국과 말레이시아

사례 3

한국 세관에서 프랑스 산 수입 물품에 대한 한·EU FTA 원산지 검증 요청이 있었다. 한·EU FTA 협정문 상에는 수입 당사국이 해당 수입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원산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신기간 10개월을 경과한 후에야 수출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가 충족하는 결과를 회신 받았다. 수출국 세관의 원산지 충족에 대한 회신을 근거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원산지 검증 결과 충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유로 기각되었고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 건들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당했다 - 간접검증 방식의 경우 원산지 지위 부여의 타당성 여부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 회신기한 경과 내지 회신정보의 충분성 등을 고려한 협정관세 배제 권한은 검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일한 통제장치가 된다.¹⁰⁾

10) 판례 2012.1.1. 선고 2011구합 6851 판결

사례 4

태국으로 철강 반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인증 수출자 업체로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왔으며 최근 태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을 받았다. 이유는 원산지 증명서 상에 소급발급 문구(ISSUED RETROACTIVELY) 미기재로 인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효력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한·아세안 FTA 협정 상 원산지 증명서가 선적일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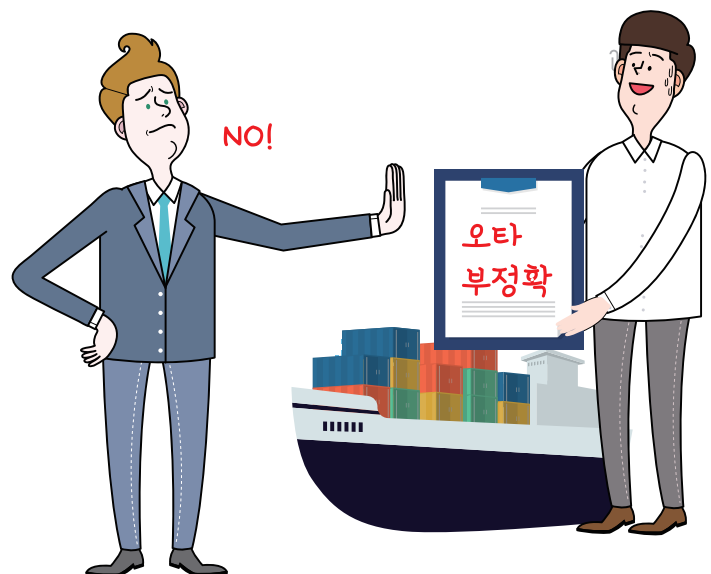
3 근무일이 경과하여 발급하는 경우 소급발급 되었다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 해당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해당 수출업체는 이미 대한민국 세관으로부터 수출 품목들에 대하여 품목별 인증 수출자 인증을 받아놓은 업체였기 때문에 원산지 증빙서류들을 제출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효력을 인정 받았다.

세관은 원산지 증명서 상의 모든 문구를 상당히 까다롭게 본다. Description 상의 조금의 오타라도 허용하지 않으며 협정적용을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에 대하여는 그 오류를 이유로 협정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¹¹⁾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전 형식적 요건 부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각 수입국 내 세관에서 형식적 요건에 대한 민감도가 판이하게 다르므로 미리 발급 전 Sample을 전달하여 수입자와 수출자가 Cross Check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한·미 FTA와 같이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도 마찬가지다.

사례4와 같이 수출자가 기관발급 신청 시에 선적일과 발급일을 직접 계산 하여 소급발급 여부에 직접 체크해야 해당 문구가 찍히므로 소급발급 문구는 누락하기 쉬운 부분이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며 원산지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에 부합하도록 발급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수출자는



11)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 관세청

4.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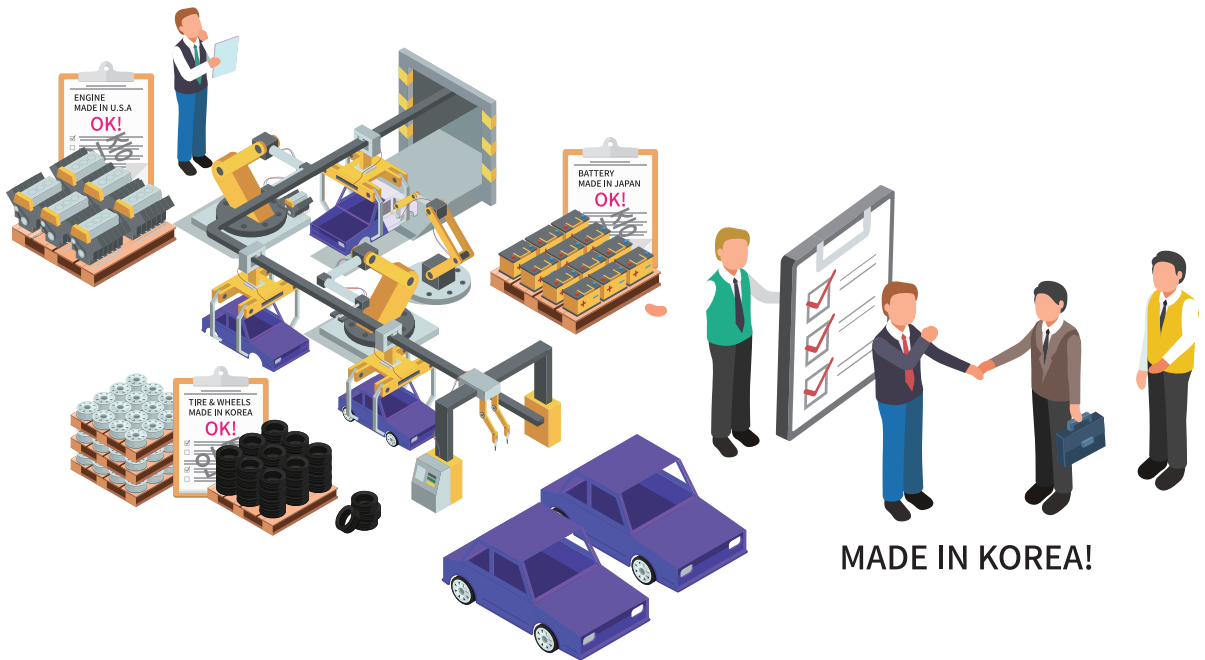
FTA 협정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지만 반면 RISK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주는 양날의 검이다. 또한 FTA는 철저한 Business Model이다. 협정 체결국에서 완전생산 되었더라도 이에 증빙을 할 수 없으면 FTA 협정 상 역내산 물품이 아니다. 완제품의 모든 원재료를 수입 산만 사용하더라도 협정문 상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증빙만 할 수 있으면 역내산 물품이 된다.

FTA 초기에는 FTA 협정문에 따라 기초적인 증빙자료들만 있으면 검증 대응이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물류가 발전하고 새로운 항로가 개발되는 등 무역환경이 변화하며 증빙해야할 부분도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검증 주체 관세 당국의 검증 건수 증가와 함께 검증 기술도 고도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추지 않으면 양날의 검 끝이 향하는 곳은 기업 자신이 될 것이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주체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HS CODE 관리, 재고 및 원가 관리를 충실히 하는 것은 당연하며 새로운 검증 이슈들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항상 FTA 전문가와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각종 FTA 관련 교육 및 FTA-PASS와 같은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인력 및 비용 걱정 없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다.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는 수입자 또한 수입 계약 당시부터 원산지 검증에 성실히 대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을 삽입하도록 하는게 수출자에게 좀 더 원산지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다. 또한 수출자가 보내온 원산지 증명서를 맹신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항상 제공받은 원산지 증명서 상의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고 협정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특히 원산지 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매년 또는 반기별로 수출자에게 원가 체크를 하였는지 부가가치율이 변하지 않았는지 체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 협정문 서문에서는 '양국의 오랜 그리고 강한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고, 양국간의 긴밀한 경제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중략...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다자적, 지역적 및 양자적 협정과 약정상의 그들 각각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여, 그리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 축소를 추구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경제적 지도력을 증진하기를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라고 협정문을 시작한다. FTA 협정은 궁극적으로 협정 체결 당사국 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체결되는 하나의 약속이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신뢰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원산지 검증은 더 이상 기업 내 RISK 항목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더 많은 기회와 소득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FTA TRADE REPORT

